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 선고 2020가단253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0. 6. 3.

판결 선고2020. 7. 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연대하여 74,986,870원 및 그 중 54,210,244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 C 주식회사, 피고 D은 연대하여 979,354원 및 그 중 770,000원에 대하여,

각 2018. 7. 1.부터 2020. 5. 8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C 주식회사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피고 D, 피고 E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차영민

별지